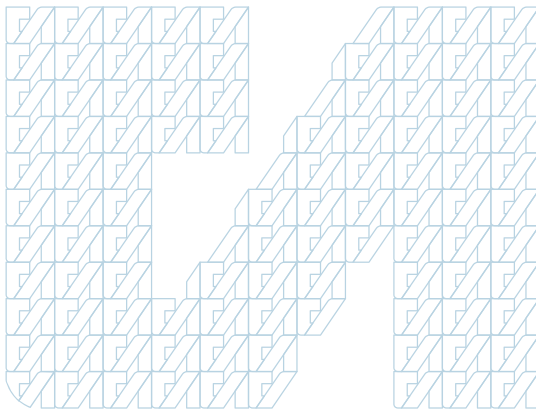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유 병 선



연구책임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기본연구 2018-02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욱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5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연구배경

-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나타난 지방화(localization)는 지방 차원까지 세계화가 확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까지 도래하게 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도시를 둔 지방은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지구촌 전체와 소통이 가능해 짐.
- 중앙정부는 복잡한 외교적 절차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방화 현상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SNS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활용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외교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확산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여론 환경에서 공공외교는 목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국내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음.
-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인 공공외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구목적

-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대한민국 공공외교법」과 「공공외교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한국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해 온 주요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강조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제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과 「대한민국 공공외교법」과 「공공외교시행령」의 주요 내용,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제1차 공공외교주간 행사(2018)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
- 공공외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국가(7개국)의 공공외교 사례, 한국정부 및 한국의 지방정부가 시행해 온 주요 공공외교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였음.
-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관련 현황을 일차적으로 파악해 봄.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 현황,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 전담 인력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함.
- 아울러 향후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를 통해 지방정부 공공외교 제도화를 모색함.

■ 정책적 함의

- 공공외교 역시 외교의 일환이다. 공공외교 초기 단계에서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이익의 증진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정권 출범 시마다 신정부가 주창하는 국가상을 홍보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한인택 2016, 8-11).
-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동시에 정책을 추진하면 함께 국가이익의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지방정부에서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과 조직의 부족임.
- 외국어 능력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대전시의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말 할 나위도 없음.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지역사회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들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전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공외교의 기본적인 특성이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공외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따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재 가운데 미디어는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디어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외신기자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위원회 등이 언론인 국제교류 활동을 펴고 있음.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디어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상기 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외교가 그 본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대전시가 그동안 국제적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축적된 인프라를 토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6
2장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1절. 공공외교의 정의	9
2절. 선행연구	11
1. 주요국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11
2.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12
3.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13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3절. 공공외교의 등장과 지방외교	15
1. 공공외교의 등장	15
2. 지방외교의 활성화	17
3장 공공외교의 주요 사례	19
1절. 주요 국가의 공공외교 사례	21
1. 미국의 공공외교 사례	22
2. 중국의 공공외교 사례	23
3. 일본의 공공외교 사례	23
4. 영국의 공공외교 사례	24
5. 프랑스의 공공외교 사례	24

6. 독일의 공공외교 사례	25
7. 이스라엘의 공공외교 사례	25
2절. 한국의 공공외교 사례	26
1. 변천과정	26
2. 공공외교법의 주요 내용	28
3.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9
4. 제1회 공공외교주간 행사	34
3절.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사례	36
1. 중국 산둥성의 공공외교 사례	36
2. 수원시의 공공외교 사례	38
3. 초 지방관계 사례	43
4장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45
1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	47
1. 기본원칙과 경과	47
2. 대전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48
3. 대전시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	49
4. 대전시 국제교류 전담인력 현황	53
2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진단(FGI)	55
1. 조사 설계	55
2. 결과	56
3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요약	62
5장 대전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63
1절. 중앙정부와의 공조체제 유지	65
1. 국익 추구를 위한 협력	65
2. 정부의 효율적 지원전략 강구	66
2절. 대전시 자체의 노력	67
1. 전문성과 지속성의 확보	67

2. 적극적인 정부사업 유치	68
3. 미디어 외교 활성화	68
4.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69
3절.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안)	70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3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75
2절. 정책 제언	76
1. 중앙정부와의 협력	76
2. 대전시 자체의 노력	76
참고문헌	79
부록	85

표 차례

〈표 2-1〉 주요 선행연구의 범주별 분류	11
〈표 2-2〉 외교의 변천	16
〈표 2-3〉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에 따른 공공외교의 종류	17
〈표 2-4〉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대상국가	18
〈표 3-1〉 주요 국가 공공외교 사례	21
〈표 3-2〉 한국 공공외교의 시기별 목적과 특징	26
〈표 3-3〉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30
〈표 3-4〉 대한민국 공공외교 추진과제	31
〈표 3-5〉 「제1회 공공외교주간」 행사 주요 프로그램	35
〈표 3-6〉 중국 산둥성 공공외교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	36
〈표 3-7〉 중국 산둥성 공공외교 추진기관 및 주요 업무	37
〈표 4-1〉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총괄	48
〈표 4-2〉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교류 현황	50
〈표 4-3〉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교류 현황	51
〈표 4-4〉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 현황	53
〈표 4-5〉 주요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지원조직/인력 현황 추진현황	54

부록 차례

〈부록 1〉 대전광역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85
〈부록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88
〈부록 3〉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91
〈부록 4〉 FGI 설문지	94



서론

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장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국가 간 교류가 확산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시대와 세계사회가 독자적 차원을 보여주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도래함. 지난 수십 년간 활발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경제와 국제사회를 만들어 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성공적인 초국가모델로 꼽히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나타난 지방화(localization)¹⁾는 지방 차원까지 세계화가 확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²⁾까지 도래하게 하였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도시를 둔 지방은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지구촌 전체와 소통이 가능해 짐.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복잡한 외교적 절차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방화 현상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SNS 등 연성권력(soft power)³⁾을 활용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외교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확산되어

1) 일찍이 세계화 현상에 주목했던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세계화 현상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정부를 세계무대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Giddens 1990). 지방화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세계적 차원의 활동 주체로 거듭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세방화 개념의 출발점은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의해 고전적인 국경과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의 세계질서가 해체되는 과정,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역 단위의 경제주체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 시장경쟁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활의 기회로서 세계화 추세를 활용하는 과정 등이라고 볼 수 있다(차재권 2017a).

3)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 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력 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게 하는 힘을 나타내는 용어다. 또한 21세기에는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smart power)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Nye(2004, 5-11; 2011, 100-109) 참조.

지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여론 환경에서 공공외교는 목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국내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음(송택은 2018, 1).

-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함.
-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외교법에 대한 관련법령으로 「공공외교법」(2016.2.3)과 「공공외교법 시행령」(2016.6.4.)을 제정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활동의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외교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한편 공공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6번째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으로 설정된 사항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구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요구됨.
- 아울러 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정에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공공외교의 역할이 요구됨. 특히 미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의회, 언론,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설득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탐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동 사례 검토,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추진현황과 문제점 도출을 통한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목적을 가짐. 첫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대한민국 공공외교법」과 「대한민국 공공외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임.
- 둘째, 한국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해 온 주요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사례로 중국 산둥성과 경기도 수원시의 공공외교 사례와 도시 간 협력 공공외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넷째,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강조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에 기여하고자 함.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 고찰
- 주요 국가 및 한국의 공공외교 사례 고찰
- 지방정부(중국 산둥성, 경기도 수원시)의 공공외교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현황과 문제점 도출
- 전문가 심층면접(FGI)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및 대안 도출
-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방안의 하나로 관련 조례(안) 제시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수행한 공공외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임. 문헌연구는 국내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분석, 국가별 공공외교의 주요 정책 비교,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정책 사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기로 함.
- 아울러 공공외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러한 심층면접은 공공외교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연구하는 연구진, 그리고 실제 공공외교를 포함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임.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절. 공공외교의 정의
- 2절. 선행연구
- 3절. 공공외교의 등장과 지방외교

2장

2장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공공외교의 정의

- 공공외교는 외국의 정부나 공적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말하며,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국의 공중(public)의 인식을 변화⁴⁾시키는 정부 및 지방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을 의미함(한인택 2016, 4).
-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에드먼드 굴리온(Edmund Gullion)은 “대외정책의 형성과 정책에 있어 대중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활동”으로 정의함(Cull 2008).
- 한스 투후(Tuch 1990)는 공공외교를 “자국의 국가적 목표 및 정책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타국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 기타 여러 학자들의 의해 공공외교의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졌지만, 그 핵심적 요소는 ‘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winning the hearts and minds)’이라고 할 수 있음(마영삼 2011).
- 대한민국 공공외교법에 의하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공공외교법 제2조).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외교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공외교는 흔히 “타 국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⁵⁾으로 표현됨. 공공

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영국대표단으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한 해롤드 니콜슨(Harold Nicolson)은 1939년에 집필한 『외교』(Diplomacy)에서 공개외교 및 외교의 민주화로 여론(public opinion)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Nicolson 1950, 70).

5)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해외여행 시 관광지에서 낙서를 하여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반면,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당시 한국인이 보여 준 “금모으기 운동”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외국 사례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러시아 청년들과 백악관에서 농구를 하는 즐겨 하였고, 한국 방문 시에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외교는 주로 외국의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NGO·대학·언론 등도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됨.

- 최근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단체·기관도 공공외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공공외교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지만,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국민 개개인, NGO, 기업, 지방자치단체, 각급 정부기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상대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때 비로소 공공외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진행하는 등 외국 민간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외교를 보여준 사례가 주로 회자된다.

- 6) 공공외교는 부정적 의미의 선전(propaganda)을 대체하고 목표 공략층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감성과 이성애 호소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와 구분된다(김성해 2014).

2절. 선행연구

- 공공외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세 범주의 주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표 2-1] 주요 선행연구의 범주별 분류

범주	제목	저자(연도)
주요 국가 공공 외교	- Public Diplomacy at the crossroads	McDowell(2008)
	-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송태은(2017)
	-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백우열 · 함명식(2017)
	-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김태환(2016)
한국 공공 외교	-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김기정 외(2012)
	- 우리나라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현인택(2016)
	- 현 정부 정책공공외교의 현황과 전략적 방향	김태환(2016)
	- 한국의 공공외교와 세종학당	변지영 · 정현주(2018)
지방 정부 공공 외교	- 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장세길(2008)
	- 전라북도 국제교류 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신원득(2016)
	-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차재권(2017)

1. 주요국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 공공외교 관련 연구는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분석 단위를 국가단위에 초점을 두고 개별국가의 현황 또는 국가 간 비교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룸.
- McDowell(2008)은 1960년대 공공외교가 공식적인 방법과 평행적인 수단을 통해 타국 정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반면, 현재의 공공외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도 외교관계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송태은(2017)은 탈냉전기 미국 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이 클린턴 행정부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봄.
 - 이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외교의 기초 변화는 미국이 내세운 세계적 어젠더가 타국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대중의 지지를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가의 여부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 9·11테러 이후 미국은 세계여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처음에는 반미감정 차단과 민주주의 전파를 위한 공동외교를 전개하였으나, 점차 시민역량과 해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수신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임.
- 백우열·함명식(2017)은 중국의 대한민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이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주요 주변국인 대한민국을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교, 싱크 탱크, 미디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다량의 자원을 투입하였다는 것임.
 - 또한 중국의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한계 요인으로 '중국과 한국의 국력 비대칭성', '하드파워의 소프트파워 대비 우위성', '중국 권위주의의 수직적 체계'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
- 김태환(2016a)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공공외교의 특징과 한국적 함의에 대해 분석을 시도함.
 - 그는 미국은 혁신형·가치지향형 공공외교로, 일본은 수정주의적 공공외교로, 중국은 선전형 공공외교로, 러시아는 대안적 가치 지향형 공공외교로 그 특징을 규정함.
 - 한국적 함의로서는 문화외교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본질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전파하는 주창형 공공외교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함. 또한 강대국과 차별화된 중견 중견국으로서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 김기정 외(2012)는 주요 국가들의 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를 정부 부처,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 국회,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함. 이들은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업무가 중첩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함.

- 현인택(2016)은 한국의 공공외교가 단기간 내에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추진체계와 방식 정립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한류의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일본에서의 반한 정서 심화 등을 예로 들면서 공공외교 자원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공공외교의 초점을 단순히 국가이미지 개선이 아닌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와 정부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태환(2016b)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공외교의 현황과 전략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그는 한국 공공외교의 형태와 체계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책공공외교와 통일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정책공공외교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외교부가 정책의 기획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집행은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의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국내 정책연구소와 외국 정책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정책 이슈들을 취급하는 온라인 정책저널의 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변지영·정헌주(2018)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각국에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보급정책이 정치·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용인이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
 - 한국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승인이나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같은 경제적 용인과 더불어 한류(韓流)의 확산이 한국어 수요 증가라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임.

3.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 장세길(2008)은 지방외교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신뢰와 협조 하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봄.
 -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미시적 조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은 전라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지방정부가 국제교류를 추진할 시 그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함.
 - 국제교류를 실시할 경우영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과 실시할 경우 중점 분야와 명확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신원득 외(2016)는 지방의회(경기도)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이 연구에서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기본방향 기본 전략과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영역과 자치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행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추진기반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예산편성의 현실화, 지원 체계의 정비와 확대 개편, 운영과정의 효율성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차재권(2017b)은 한국의 지방정부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외교와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행위주체로서의 긍정적 행위 주체로서 평가됨과 동시에,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사회를 지역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평가함.
 - 지방정부의 공공외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방식으로의 진행,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추진, 중앙정부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균형을 고려한 추진, 신뢰에 토대를 둔 공공외교의 추진, 다문화 이주민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한국의 공공외교는 주요 선행국가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범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는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3절. 공공외교의 등장과 지방외교

1. 공공외교의 등장

-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대(Tufts University) 플래처스쿨(The Fletcher School) 학장인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Gullion)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를 설립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구조 아래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
-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공공외교에 관한 논의도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듯 하였으나, 2001년 9.11 테러,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전,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핵심을 이루는 하드파워가 한계에 봉착하고 정부 간 외교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가 다시금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음.
- 20세기의 공공외교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동서냉전 프레임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면, 21세기의 공공외교는 9.11 이후 하드파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부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민주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가 외교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피플파워(people power) 대두, 소셜미디어·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시공간의 격차 해소, 정보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대중에 의한, 대중을 향한 개방형 외교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의 주체, 대상, 자원, 매체 등을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가 가능함.

[표 2-2] 외교의 변천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 다양한 민간 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자국민 불 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자국민 포함)
자원	하드파워	하드파워)소프트파워	하드파워(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캠페인, 구 미디어	인터넷, SNS,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공공외교는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다양하며, 어떠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및 가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필립 자이브(Philip Seib)는 공공외교의 성공여부가 상대국가의 정치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중동에서 공공 외교를 실패한 이유는 중동 지역 무슬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음. 미국은 중동 대중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며 미국의 정치체제와 가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다는 것임(Seib 2016, 49).
- 한편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방식을 소프트 파워의 종류에 따른 유형화를 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공공외교의 종류를 도출할 수 있음.

7) 무슬림권에 전파하기 위해 만든 미국 광고사가 만든 비디오 클립(video clip)에서 무슬림계 미국 시민들이 미국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무슬림들에게는 불쾌하게 인식되었다.

[표 2-3]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에 따른 공공외교의 종류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
문화외교	• 문화자산 가공
지식외교	• 지식자산 가공(교과서 · 책 발간)
정책외교	• 현 정책 가공(예: 통일외교)
미디어외교	• 미디어 매체(예: CNN, BBC, NHK, KBS)
기업외교	• 다국적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한 외교
스포츠관광외교	• 스포츠 · 관광 자산 가공

2. 지방외교의 활성화

-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대외관계는 다음과 같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등 세 차원에서 이루어짐. 지방정부의 국제관계는 국가의 외교행위에 대비하여 지방외교(local diplomacy)나 자치외교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정태적인 협력관계의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지방정부가 외국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인적, 물적 자원 혹은 제도나 정보지식 등의 교환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국제교류는 주로 문화 활동이나 민간 차원의 관계 형성을 의미함. 국제협력은 주로 협력 주체들 간의 사업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는 관계를 지칭함(박재욱 · 류재현 2009). 이상의 세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음.
- 한국 지자체가 외국과 첫 교류를 한 것은 1961년 진주시가 미국 오리건주 Eugene 시의 요청으로 결연을 맺은 것을 시초로 함. 그러나 1980년대까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20여 건에 불과함.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는 자매결연을 비롯한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함. 2017년 말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223곳(전남 1곳, 경북 3곳 제외)이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음.
- 그 대상은 79개 국가 1,233개 도시와 1,654건의 자매(54개국 653개 도시 697건)

또는 우호 관계(72개국 723개 도시 957건)를 맺고 있는바, 자치단체 1곳 당 평균 6.9개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교류의 대상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일본과 미국 순임.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대상국가와 건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2-4]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대상국가 (건수)

중국 (652)	일본 (217)	미국 (185)	베트남 (62)	러시아 (55)	필리핀 (47)
몽골 (42)	호주 (29)	터키 (24)	인도네시아 (22)	캐나다 (21)	멕시코 (17)
프랑스 (14)	중동 (14)	인도 (10)	영국 (8)	스웨덴 (2)	

출처: 허훈(2018)을 참조하여 재구성.

공공외교의 주요 사례

- 1절. 주요 국가의 공공외교 사례
- 2절. 한국의 공공외교 사례
- 3절.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사례

3장

3장 공공외교의 주요 사례

1절. 주요 국가의 공공외교 사례

[표 3-1] 주요 국가 공공외교 사례

국가	주무부서	주요 사업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담당차관 (세 명의 차관보, 지역별 부차관보가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 사태 계기 전 세계적 반미주의 대응 • 해외 여론주도층 대상 미국정책 홍보 • 학습·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양자관계 증진
중국	외교부 공공외교 판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홍보 강화(중국 위협론에 대응) • 후진타오, 공공외교를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표 (2010) • 105개국 358개소 공자문화원 설립⁸⁾ / 대규모 원조개발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에 맞는 문화적 위상·매력적 이미지 제고 •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 해외 공보문화원, 일본재단(Japan Foundation) 사업 시행
영국	외교부 커뮤니케이션 담당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육(British Council) • 문화·과학·기술 협력 사업
프랑스	전략방향위원회, 인스티튜트 프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문화외교 실시, 가장 많은 투자 • 프랑스어 보급 목표로 '앙리앙스 프랑세즈'⁹⁾ 홍보
독일	외교부 문화·커뮤니케이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관련 민간기관들에 사업예산 지원 • 독일어보급 활성화, 저개발국 해외교육 지원사업
이스라엘	공공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유대주의 대응 • 최초로 공공외교 장관직 설치

8)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한 자국어 해외 보급에 있어 한어에 담긴 중국의 가치관인 조화(和譜), 화목(和睦), 평등(和平) 등 세 개의 '화(和)'를 추구하는 국가 이미지를 같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보고 2014).

9) 프랑스는 자국의 식민지를 본국과 정치·문화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언어 정책을 주요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 또한 프랑스어 해외 확산을 통해 16세기부터 유럽의 귀족 언어로서 영광을 쌓아온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1883년 앙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하였고, 당시 6백만 프랑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 주요 국가의 공공외교 유형은 정부주도형(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관민혼합형(독일), 민간주도형(영국)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 중 민간주도형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정부는 자원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김기정·최종건 외 2012, 9-34).

1. 미국의 공공외교 사례

- 미국은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와 같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오랜 기간이 걸쳐 조사해 옴. 미국 정부가 9·11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데에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해외여론이 악화된 것을 확인한 것에 기인함(송태은 2017, 175-182).
- 미국은 냉전시대 동서이념 대립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펼쳤던 해외정보국(United States of Information Agency, USIA)를 예산 문제로 국무부에 편입시켜 기능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 바 있고,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형무소 및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 인권문제 논란 역시 미국이 공공외교를 강화하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임.
- 이후 미국은 국무부에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직’을 신설하는 등 공공외교 총괄 조정체제를 구축함.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 산하에 문화교육차관보, 홍보조정관, 공보차관보 등 3개 차관보를 두고, 각 지역 담당부서도 지역별 공공외교 부차관보를 두어 본부에서 지역별 기획과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함. 국무장관이 American Public Diplomacy Envoy를 임명·파견하고, 정부 주요인사의 외국 방문 시 직접적인 대민접촉 일정을 갖도록 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0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port: QDDR)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두 축으로서 Military Power와 Civilian Power를 동격에 놓고, 전 세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Smar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2. 중국의 공공외교 사례

- 중국은 경제력 세계 2위 추구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응하여 ‘책임대국론’, ‘평화부상론’ 등을 발표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 중임. 2010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공공외교를 중국의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표하고, 2012년 12월 공공외교 전담 시행기관인 ‘중국공공외교협회(회장 : 리자오싱 전외교부장)’를 설립함. 또한 중국어 보급이나 중국 문화 공연단 파견 등을 통해 친 중국적 네트워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개발 원조를 통해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축적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의 공공외교는 당 중앙의 대외선전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함. 이러한 전략 아래 각 부처별로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는 대변인실과 정책홍보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수행 중임.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자학원은 2004년에 설립된 이래 점차 확대되어 현재 약 110여 개 국가에 45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중국어 및 중국 문화 보급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3. 일본의 공공외교 사례

- 일본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적 위상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노력 강구하고 있음. 외무성 대신관방(차관보급) 산하의 외무보도관실이 공공외교를 총괄 조정하는 가운데, 외무성 소속 해외공보문화원 및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구체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시대적으로, 1950~1960년대에는 군국주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1960년대~1970년에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일본’을 강조하였음. 1980~1990년대에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과 ODA에 관심을 기울였음.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일본의 3대 외교기축 중 하나로 공공외교를 채택함.

4. 영국의 공공외교 사례

- 영국은 외교부가 공공외교 업무를 총괄하고,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Wilton Park과 British Council, BBC World Service 등이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부, 무역투자청 등 관련부처에서도 공공외교에 관여하고 있음. British Council과 BBC World Service는 외교부 등으로부터 정부기금을 받아 운용되고 있으나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분권화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 장학금 지원·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5. 프랑스의 공공외교 사례¹⁰⁾

- 프랑스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문화외교에 눈을 뜬 나라이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임. 프랑스는 2010년 '전략방향위원회' 및 2011년 '인스티튜트 프랑세(Institute Francais)'를 통해 통합적인 공공외교 수행하고 있음. '인스티튜트 프랑세'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프랑스 문화 대외홍보, 언어교육, 개도국에 대한 문화예술 보급 지원, 영화 및 영상매체 해외보급 등의 사업을 통합하고 수행하는 외교유럽부 산하의 비영리 특수법인임. 특히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아 '앙리앙스 프랑세'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영어만능의 시대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외교문화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컬티르 프랑스(Cultures France)'를 통해 프랑스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각국의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외교 정책은 자신의 문화 전파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나아가 저개발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방적 전달에 치중하고 있는

10) 프랑스 지방정부의 대외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지방정부와의 화해를 목적으로 자매결연 형식으로 구체화 된 이후, 시대에 따라 대외협력의 내용과 대상이 변천해 왔다. 1980년대 이후 대외협력 파트너가 개발도상국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 지방정부는 개발협력의 주 행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계기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유한 권한을 확보한 프랑스 지방정부는 대외협력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분권적 협력사업이 질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마침내 「분권적 협력에 관한 1992년 2월 6일 법」이 제정됨으로써 프랑스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사업은 “분권적 협력”이라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실시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김태수 2014).

영미식 공공외교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단지 국익 추구에 문화를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인류의 공공 이익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된 마음 공략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도종윤 2017).

6. 독일의 공공외교 사례

- 독일의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혼합형 구조에서 수행되고 있음. 외교부 '문화·커뮤니케이션국'이 공공외교 정책을 총괄하되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괴테 인스티튜트(독일 문화원)와 독일 학술교류처(DAAD) 등 문화 관련 민간기관들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을 가지고 있음. 독일어보급 활성화 사업, 저개발국 해외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7. 이스라엘의 공공외교 사례

- 이스라엘은 '평화수호자', '평화조정자'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앙집중화 된 형태의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반유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 때 세계 최초로 공공외교장관직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and Diaspora)을 설치한 적이 있는 등 정부 조직상으로는 가장 적극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로, 팔레스타인 및 아랍과의 대결구도에서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한편,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공공외교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절. 한국의 공공외교 사례

1. 변천과정

○ 한국 공공외교의 목적과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 한국 공공외교의 시기별 목적과 특징

구분	시기	목적	특징
이미지 제고 단계	1950년대	- 국가 재건 - 국제사회 이미지 개선 - 반공유대 강화	- 다양한 언어 간행물, 라디오 방송 - 한민족 문화 홍보 - 인적자원(유학생, 선교사) 교류
초보적 수용 단계	1960-70년대	- 문호 개방 - 교류협력/이해 증진	- 학술, 문화/체육 교류 - 친한 인사 확보 주력 -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체결 - 대외 원조 시작
다변화 단계	1980-90년대	- 광주민주화운동 부정적 이미지 탈피 - 친선강화/ 미수교국 대상 인식 제고 - 외국 우수문화 개방적 수용으로 한국 경쟁력 향상	-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 - 한국문화 해외 소개 및 홍보 -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증대 - 대외 원조 확대
제도화 단계	2000-현재	- 한국에 대한 호감 확산 - 한국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국제사회 기여 국가위상 제고 - 글로벌 역량 강화 - 개도국과의 우호 증진	- 현지 맞춤형, 국민참여형 공공 외교 사업 마련 -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정부에 국제관계자문대사 파견 - K-Pop 등 한류 활용

출처: 문현미(2018) 참조.

- 한국의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됨.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외교포럼을 창설함.
- 2011년에는 최초로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하였고, 2012년에는 공공외교정책과가 신설되어 관련 시범사업¹¹⁾을 추진하기 시작함.

- 2013년에는 공공외교 협력센터를 개소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시행함.
- 정부는 우리의 공공외교 자산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그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78개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 현지의 관습·문화·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우리 문화의 일 방향적 전파가 아닌 쌍방향 공공외교 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자산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달성 → 개도국 성장 모델, 개발경험 전수, 선·후진국 간의 교량 역할
 - 침략의 역사가 없는 평화 애호국, 정직·근면한 이미지 → 국가브랜드
 - 다양한 콘텐츠와 역동성, 독창성, 보편성, 현대와 전통의 선순환
 - 한류에서 촉발하여 현대 및 전통문화를 거쳐 종합적인 한국 알기로 진화¹²⁾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공외교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세미나,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 맞춤형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매력을 소개하는 매력한국알리기 사업
 - Quiz on Korea, K-food World Festival, K-pop World Festival, 동영상 콘테스트 등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기능 경연의 장인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 수도 이외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을 알리는 지방순회 카라반(caravan)
 - 현지 주요대학,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한국의 선진 IT기술이 가미된 복합 한국 홍보관 Korea Corner 개설사업
 - 현지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동호회, 태권도동호회, 한국유학/근무경험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홍보토록 하는 K-Lover(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사업
 - 유명 외국인을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하는 공공외교 친선대사사업
 - 외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 서술 확대 사업

11) 대표적인 시범사업은 "I Love Korea, Because...동영상 콘테스트", "Quiz on Korea", "Korea Corner" 등이다.

12) 김장현(2012)은 한류와 국가이미지의 관계가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배양효과, 한류붐 견인 효과(후광효과), 동조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공공외교의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은 다음.
 - 국민이 공공외교 프로젝트의 직접 기획·시행자로 참여하는 “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
 - 국내외 청년의 자발적·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청년 공공외교단”
 -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활용한 “시니어 공공외교단”
 - 젊은 문화예술 인재를 문화적 불모지인 개도국에 문화봉사단으로 파견하여 현지의 문화꿈나무를 발굴하는 “글로벌 문화꿈나무”
 - 국내 대학생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각 공관이 시행하는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측면 지원토록 하는 함으로써 공공외교 참여기회 제공

2. 공공외교법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1조)
- 이 법에서는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
-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둘째,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셋째,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조)
-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에는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6조 2항)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함. (제7조 1항)
-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 1항),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 항목에는 “외국 정부·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구축 지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9조 1~4항)
-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활동의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9조 1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 외교부는 한국의 통합적 공공외교 전략 수립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추진 경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우선 공공외교법 제정 및 발효(2016.2~8) 이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016.8~2017.5)하였고, 공공외교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 수렴(2017.4~7)을 거쳐, 공공외교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2017.8.10) 과정을 거침.
-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음. 먼저 기본성격은 공공외교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5년간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주요대상은 공공외교 수행주체로서 중앙부처, 지방정부, 재외공관, 민간 등 대한민국 모든 공공외교 수행주체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은 문화, 지식, 정책 등 3대 콘텐츠별 활동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제시와 국민들의 공공외교 인식제고 및 참여강화,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관련 추진과제를 명시하였음.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공외교 수요자인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음.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3]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비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정착 		
추진 전략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문화국가 매력 확산 • 문화자산 활용 호감도 증진 • 쌍방향 문화교류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전통, 발전 이해 제고 •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에 정책 이해도 제고 •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 • 국내 외국인 대상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공공외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인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선 순환적 공공외교 성과평가 체계 확립 •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출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 위의 기본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위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와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모색하였음.

-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인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공공외교 국제 네트워크 강화, 선 순환적 공공외교 성과평가 체계 확립,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공공외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 공공외교 추진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 대한민국 공공외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1.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위상 확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기관 지정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할 강화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선진문화국가 매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 한국 예술품 소개공간으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 • 전통·현대 한국문화의 체계적 전파 •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 한식 홍보 강화 •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 문화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헌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한국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외국인 참여형 한국 관련 경연대회 개최 •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 •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13) • 해외 한국학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중점 추진과제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 체계적 정책공공외교 강화 •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확보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공공외교 지역 및 대상층 확대 • 정책 공공외교 수행주체 및 사업 방식 다변화 • 정책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국내외국인 대상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교류 강화 • 주한 외신 기자단 및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 제고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공공외교 추진 •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 국민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민간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구성 •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지원
6.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공공외교 국제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발족 및 협력기반 강화 • 재외공관 공공외교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선 순환적 성과 평가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평가모델 개발 •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제도 운영 • 공공외교 사업수행 내실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공공외교포털 기능 활성화
	기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실태조사 정례화 • 해외 한국 이미지 조사 실시

출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 13) 한국 외교부는 이를 '지식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문화, 정책과 함께 한국 공공외교의 주력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어의 해외 보급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을 설립하였고, 2018년 5월 현재 58개국 174개의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약 5만 명의 현지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등 여섯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정부와 관련을 갖는 세부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을 두는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의회’를 행안부 주최로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요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회의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파견 국제관계대사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외교현안과 외교정책 방향 설명 및 외교부의 대외교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함.
 - 지방정부의 독자 브랜드에 대한 해외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지방정부 주최 국제행사¹⁴⁾ 유치 지원과 지역별 이점과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과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행사 접목¹⁵⁾ 등을 위한 것임.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설정된 수교기념 및 주요 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 예술단의 해외진출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에 지방정부 예술단의 해외파견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¹⁶⁾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정부 주관 정착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 체험과 한국 관광지 방문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지방정부 축제 또는 대학 축제 시 외국인들의 자국 문화 프로그램 편성 등 쌍방향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중앙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부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외교부는 국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강연회, 학술 세미나,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기로 함.

14) 예를 들어,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 유치, 2017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 대전 유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 K-Pop 월드 페스티벌(창원), 재외공관 韓스타일 사업(전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6)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광부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2013),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충남국악관현악단’(2014) 등의 파견이 이루어진 바 있다.

-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내부시스템(인트라넷)을 구축함과 동시에 개별기관별 공공외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소통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4. 「제1회 공공외교주간」 행사

-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추진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3일간 「제1회 공공외교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행사명
 - (국문) 제1회 공공외교주간 - 지금은, 공공외교시대!
 - (영문) The 1st Public Diplomacy Week
- 개최목적
 -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 추진근거
 - 공공외교법 제12조 2항(공공외교 추진기관 수행사업)
 -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추진 방향
 -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 박람회 개최
 - 공공외교 시대를 맞아 국내외 공공외교 주체들의 활동 상호 공유
 - 공공외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참여기관
 - 해외공공외교기관
 - 주한외국공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기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유관기관 등

○ 참여대상

- 공공외교 전문가
- 주한외국공관 외교관
- 지자체 국제교류담당자
- 대학(원)생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청소년 등

○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5] 「제1회 공공외교주간」 행사 주요 프로그램

유형	세부내용
기념행사	• 제1회 공공외교주간 개막행사(공연, 환영오찬)
전체회의	• 공공외교 정책세미나(기조강연, 발제, 종합토론)
전시마당	• 국내외 공공외교기관, 주한공관, 지방정부, 기업, 민간단체 홍보관 운영 • 청년공공외교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우수사례 전시, 사진전 등
성공사례 발표	• 청년공공외교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우수사례 시상 • 주한공관, 국내외 공공외교기관 우수사례 발표회 • 지방 및 기업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마당	• 공공외교 온가족 체험행사, 주한외국공관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세계문화 공연/전시	• 세계문화공연/영화 상영 및 아세안 스트리트아트전

3절.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사례

1. 중국 산둥성의 공공외교 사례

1) 주요 정책

- 중국은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 특히 개혁개방의 실시 이후 지방으로 권한 분배와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후 공공외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
- 중국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는 지방정부에서 ‘외교’ 대신 ‘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각 영역에 따라 상무청, 여유국(旅遊局) 등에서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각 지방정부에 설치된 지방우호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 산둥성에서 추진 중인 공공외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6] 중국 산둥성 공공외교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

목표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 외교 - 국제사회 위상 제고 - 대외개방 발전 - 소프트파워 증대 - 문화강성, 문화번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학원 공동 구축 추진 - 유학 교류협력 강화 - 국제 공자문화제, 세계유학대회, 산둥문화의 해 활성화 - 국가크루즈경제종합실험구 조성 - 인재개혁시범구 조성 - 인문교류와 생태영역의 협력

출처: 문현미(2018) 참조.

- 중국 산둥성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 온 인문유대를 중시하는 공공외교의 기본방침을 따르고 있음

2) 주요 행위자와 주요 업무

- 중국 산둥성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기관 및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3-7] 중국 산둥성 공공외교 추진기관 및 주요 업무

기관	주요 업무
외사판공실	- 대외교류/외빈, 외국 신문사 및 기자단 관련 업무 - 우호도시 체결 및 명예공민 수여 - 국제 비정부조직 참여 / 대외 선전 및 외사 교육
문화청	- 전통문화 계승 및 보호 / 대외 문화교류 및 대외 선전 등
여유발전위원회	- 해외지역과의 교류 협력 및 관광지 개척, 홍보 등
교무판공실	- 화교 관련 제반 업무 - 화교, 화교단체, 홍콩·마카오 화교계와의 연락 및 대만업무 수행 - 대 화교 선전 및 교육 실시
상무청	- 대외 원조
인민대외우호협회	- 산둥성교류 협력 체결 관련 전반 업무

출처: 문현미(2018) 참조.

- 중국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는 외사판공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외사업무관련 지침 결정 및 주요 외사업무 통솔
 - 홍콩, 마카오 교류 협력 관련 주요 외사업무 집행
 - 경제건설 및 대외개방 관련 외사 조사 연구
 - 공무원 출장 출입국 업무
 - 해외 방문자(국민, 당빈, 기타 외빈) 및 외교부 위탁, 산둥성 내 외국신문사 및 기자 관련 업무
 - 공무원 국외활동 현황 관련 업무
 - 산둥성 내 해외 영사관 관리 및 산둥성 관련 부서와의 교류 업무
 - 외국 우호도시 교류협력 업무 및 명예공민 수여 관련 업무
 - 국제비정부조직(INGO) 참여 관련 업무
 - 외교적 사건에 대한 협조, 출국, 훈련 및 외국인 관리 업무
 - 간부 및 담당자 교육, 대외 선전과 대중성 외사 교육 업무
 - 외사기율 처리 관련 업무
 - 성위원회 외사 업무 영도소조 관리

3) 공공외교 주요 사례

○ 교류외교

- 산동성은 2016년 현재 59 국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지방 정부 간 교류지역은 아시아(20), 아메리카(12), 유럽(20), 오세아니아(3), 아프리카(4) 등 세계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됨.

○ 기여외교

- 산동성은 적극적으로 대외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함.
- 대외 원조의 구호물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물자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음.
- 중국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부관료연수, 학위교육, 전문기술훈련, 및 기타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 문화외교

- 공자로 대표되는 중국철학 모형을 세계에 전파하는 사업을 전개함.
- 정기적인 학술교류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의 중흥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블로그의 일종인 웨이보, 대준 대화채널인 웨이신, 정부부문에 특화된 웨이먼후를 플랫폼으로 삼아 SNS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구들은 웨이보를 이용해 산동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음.

2. 수원시의 공공외교 사례

-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분권의 더딘 진행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공공외교를 시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수원시국제교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중심도시 수원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음

1) 시민 글로벌 의식 함양 사업

- 국제교류서포터스 SCVA(Suwon Center's Volunteer Activators)
 - 수원시민 및 수원권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데이 기획 및 운영, 영문 기사 작성 교육
- 세계언어·문화연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가능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현지문화 체험 및 언어학습을 돕고, 자매우호도시 및 교류가능한 세계도시를 상호 방문하여,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수원시민의 역량 강화
- 글로벌 인문학
 -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세계 각 지역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해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증대 및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
- 국제활동 멘토와의 만남
 - 국제활동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제 활동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 정보제공 및 향후 진로방향 탐색, 동기부여 기회제공
- 토크라운지(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외국어를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운영
- 후쿠이시와의 스카이프 화상언어교류
 - 수원시 일본어 학습자와 후쿠이시 한국어 학습자가 화상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글로벌 문화예술 전시 공연
 - 세계적 수준의 해외공연단 초빙 및 전시회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국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

2) 국제교류사업

- 국제자매도시의 밤
 -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수원시민
 - 수원화성문화제를 기념하고자 각국 전통예술단을 초청하여 시민과 함께 세계

전통예술을 즐기기 위한

- 고려인 초청
 -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 거주 고려인 대표단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초청하여 전통문화체험 기회 제공
- 한국수원-중국 지난 유소년 스포츠 교류
 - 축구, 배드민턴 등 유소년 선수단 간 상호방문을 통한 친선경기 및 공동훈련, 교류회 진행
- 수원언어·문화연수
 -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한국어 학습자 단체 대상
 - 지역축제 참여 및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문화 체험
 - 수원시민과의 언어문화교류 진행
- 지난대학교 어학연수
 -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수원시민 대상
 - 중국 지난시와의 중화권 어학연수 기회 제공
 - 어학연수비용 전액 반액 면제
- 국제자매도시 국제행사 시민교류 지원
 - 류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수공예축제, 러시아 니즈니보고로드 국제전통예술축제에 수원시 전통 수공예가 1~명이 참가
 - 전시 및 체험을 통한 공예 홍보 및 교류
- 수원소식 해외교민 전파
 - 수원 국제자매도시 내 한인공동체 대상
 - 수원시 월간 소식지를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에 거주하는 해외공동체에 매월 전파
- 수원시 학생 시즈오카 방일연수
 - 수원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학생교류를 통한 일본 지역사회 이해
- 시즈오카시 대학생 수원 초청사업
 - 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문화 이해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호관계 증진
- 수원-후쿠이 초·중학생 국제교류 작품전
 - 국제우호도시 후쿠이시와의 초·중학생 미술작품교류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및 활성화 도모

○ 수원 홈스테이

- 수원시 호스트가정을 통해 외국인게스트에 대한 숙박 및 식사,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 국제자매·우호도시 해외통신원

- 현지인 및 교민을 해외통신원으로 위촉, 자매우호도시에서 일어나는 생산한 사회문화 소식을 전달받아 홈페이지에 게재

3) 국제개발 협력 사업

○ 캄보디아 「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 캄보디아 시엠립주 빈곤지역인 수원마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ODA사업의 모범이 됨
- 학교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사업, 소득창출사업 등 다양한 사람중심지원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자가발전 기반 구축
- 2007년도에 조직된 자발적 시민단체인 (사)행복캠(Happy-Cam)이 함께 수행

○ 수원마을 개발역량강화 주민초청 사업

- 화성문화제 기간 중 시엠립 주정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선진 문화 경험 기회 제공
-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소개하고 수원시의 캄보디아 수원마을 발전을 이끌 리더 양성

4)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

○ 민간국제교류 보조금지원 사업

- 수원시 자매우호도시와 연계된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수원시 단체·동아리·시민 등 대상
- 시민들이 적극적인 민간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 주체 국제도시 브랜드화 촉진 및 우수사업 발굴

5) 외국인 · 글로벌 지원사업

- 수원권 대학교 국제교류협의회
 - 수원권 대학교(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대상
 - 협의회 구축을 통해 국제교류 활동 지원, 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유학생체육대회, 유학생 유치박람회)
- 해외우수인재 유치
 - 아주 · 수원 석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학비, 기숙사비, 정착지원금 지원
 - 모로코 페즈시 어학연수 유학생 유치: 모로코 페즈시 추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 교육지원 과정, 입학원서료 및 생활비, 학비, 기숙사비, 보험료 지원
- SWCIC 한국문화데이
 - 국제교류서포터스 SCVA와 시민들이 수원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류 행사를 직접 기획 및 운영
- KF-SWCIC 수원테마답사
 - 유구한 역사의 산물이자 수원의 자랑거리인 수원화성과 첨단 전자산업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수원을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답사 진행(테마 1: 조선 궁중요리사, 테마 2: 장군의 후예, 테마 3: 과거와 현재의 만남)
- KF-SWCIC 청소년희망커뮤니티 프로젝트
 - 경인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능력 배양 (1단계: Global Youth Actor Program, 2단계: Global Youth Citizen Program)
- 한국어교실
 - 수원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 도모
- 외국어 통 · 번역 지원
 - 수원시 및 시 산하기관의 업무 지원 목적
 -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 사업에 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교류현장에 외국어 통 · 번역 지원

3. '초 지방관계' 사례

-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2013년도부터 추진한 아시아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가 2015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크루즈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시아 크루즈관광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9개국 57개 기관(2016년 12월 현재)이 참여하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사례도 존재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비롯한 개별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옴.
 - 그러나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평균 5%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던 교토협약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감축 약속을 준수하지 않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에 마련된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계획을 토대로 한 파리협약으로 대체됨.
- 최근 도시와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행위자로 등장함. 국가들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감축계획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 대처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시 간의 국제관계를 '초 지방관계(trans-local relation)'라고 칭함. 예를 들어 비슷한 기후변화 위험을 가진 런던, 호치민시, 자카르타, 로테르담, 뉴욕 등의 도시들은 '삼각주 도시 연결(Connecting Delta City)'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수면 상승, 태풍 재난 대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C40 도시 기후변화 리더십'네트워크의 경우, 참여한 92개 도시의 GDP 합이 전 세계 GDP의 25%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큼. 세계 인구 12명 중 1명이 C40 도시에 거주하며, 1만 가지가 넘는 기후변화 적응, 저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이태동 2018).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1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
- 2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진단
(FGI)
- 3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요약

4장

4장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1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현황

1. 기본원칙과 경과

1) 기본원칙

- 대전광역시 2011년 9월 국제적 과학·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는 ‘대전엑스포 93’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계기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임.
- 이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국제화 목표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제적 첨단과학 도시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대덕 R&D특구 등 한국 과학 과학 기술의 중심도시 여건을 활용하여 국제적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 국제적 수준의 도시 인프라 확충: 청주공항 확충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 대전컨벤션센터 시설 확충, 특급호텔, 무역전시관 건설 추진.
 - 국제적 문화·예술·축제도시 육성: 시립예술단, 국악공연 등을 대전예술의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국제적 영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HD드라마 타운을 조성
 - 외국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외국의 우수인력과 기업의 대전 유치, 대전국제 학교 유성구 신축 이전, 궁동지역에 인터내셔널 존(International Zone) 조성,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축제와 세계인 한마당 잔치 개최, 대전 국제교류센터, 대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운영.
 - 국제적 도시·시민 외교역량 강화: 국제교류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민간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2) 경과

- 대전광역시 공공외교의 경과에 대해서는 2017년에 실시한 국제회의, 경제통상추진 개최 등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함.

- 국제회의: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 '동아시아 서체추상'전 개최, '스위스로 간 이응노'전 개최 등
- 경제통상 추진: 유럽 2회, 중국 2회, 동남아 1회, 중남미 1회, 인도 1회, 중동 1회 등 총 9회에 걸쳐 무역사절단 파견. 무역박람회는 6개국 8개 도시에서 실시함.
- 한편 대전시는 중국 2개소, 일본 1개소, 베트남 2개소 등 총 5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임
 - 중국에는 경상통상진흥원이 남경대표처와 심양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음. 남경 대표처에서는 대전 상품 전시, 대전 홍보자료관, 도서열람실, 영상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심양대표처에서는 대전 상품 전시, 대전 홍보자료 전시 등을 하고 있음.
 - 일본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이 후쿠오카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전 상품 전시, 대전 홍보자료 전시 등을 하고 있음.
 - 베트남에는 대전시 기업지원과가 호치민 통상사무소와 빈증성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무소 모두 대전 상품 전시와 대전 홍보자료 전시 등을 하고 있음.

2. 대전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표 4-1]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총괄

세부과제명	사업 수	예산(백만원)	
			2018년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28	6,042.3	5,391.3
2-2. 풍부한 문화자산을 이용한 호감도 증진			
2-2-2.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	4	1,397	1,450
2-2-4.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1	170	170
2-2-6.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15	2,676.3	3,386.3
2-3.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2-3-1.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4	458	114
2-3-2. 문화 네트워크 구축	4	341	271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16	1,637.1	1,637.5

세부과제명	사업 수	예산(백만원)	
			2018년
3-1.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3-1-4.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13	1,533.5	1,588.5
3-1-6.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2	89.2	73
3-2.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3-2-3.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1	14.4	12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2	85.6	91
5-1. 국민 참여형 문화외교 체계화			
5-1-2.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	60	60
5-2.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5-2-2.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1	25.6	31
6.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3	442.6	607
6-1. 공공외교 국제 네트워크 강화			
6-1-1.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발족 및 협력기반 강화	3	442.6	607

- 앞의 내용은 2017년에 대전광역시가 외교부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시행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임.
-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항목 중에서 일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수행해야 하고 수행 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 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계획을 구상해 놓고 있으나, 대전만의 특성을 가진 계획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대전시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

- 대전시는 총 25개국 41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이 체결되어 활발한 교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교류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대전시 자매도시 교류 현황(최근 3년)

[표 4-2]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교류 현황

국가	도시	체결	교류현황(최근 3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1994	
중국	난징	1994	난징 유스올림픽 기념을 위한 청년포럼 참가(2015.9) 대전-난징 서화교류전 참가(2015.10) 난징시 대표단 방문(2016.5) 난징시 대표단 방문(2016.6)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2001	노보시비르스크 부시장 일행 대전세계혁신포럼 참가(2015.9,10, 2016.6,9,10,11) 124주년 노보시의 날 행사 및 환경포럼참석(2017.6) 125주년 노보시의 날 행사 및 환경포럼참석(2018.6)
남아공	더반	2011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2017	몽고메리카운티 방문단 대전 방문 자매결연 체결
헝가리	부다페스트	1994	
호주	브리스번	2002	2015 APCS 참가 및 2017 APCS 유치(2015.7) APCS대전개최협의(2017.12) 2018 WTA 행사 참가유치(2018.5)
베트남	빈증성	2004	대전시장 등 대표단 빈증성 방문(대전 경제 문화교류 전시관 개관, 의료관광설명회 등, 2015.10) 빈증성장 면담, 빈증성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2017.6) 빈증성의 WTA 회원가입 및 제11차 WTA총회개최 협의(2018.1) 대전시-WTA-빈증성 MOU체결(2018.3) 2018 WTA 국제행사 관련 실무협의(2018.4)
일본	삿포로	2010	대전시 대표단 삿포로시 방문, 삿포로시 눈축제 참가(2015.2) 대전시 청소년 13명 한러일 청소년교류 참가(2015.7) 삿포로 대표단 내방 2017 APCS 대전개최 참가(2017.9) 시 대표단 삿포로 방문, 삿포로시 눈축제 참가(2018.2)
중국	선양	2013	선양 자매도시 사진 순회전 참가(2015.9) 합동투자설명회 및 기업간 투자상담회 개최(2015.12) 투자유지활동(2016.5) 청소년교류활동(2016.6)
미국	시애틀	1989	
일본	오다	1987	오다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대전시의회 방문(2018.9)
스웨덴	웁살라	1999	
캐나다	퀄거리	1996	자매결연 20주년기념 미술문화 국제교류 협의(2017.4)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자매도시 중 최근 3년 간 단 한 건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가 4개국에 달함.
- 교류가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에도 WTA 회의 참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행사 참석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대부분의 교류는 통상적인 상호 방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대전시 우호도시 교류 현황(최근 3년)

[표 4-3]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교류 현황

국가	도시	MOU체결	교류현황(최근 3년)
대만	가오슝	2017	가오슝시 부비서장 일행 2017 APCS 참가(2017.9)
프랑스	니스	2005	니스교통공사 방문 및 트램시스템 시찰(2016.3)
독일	드레스덴	2016	대전시 미협 드레스덴 예술축제 참가(2016.2) 드레스덴 경제국장 및 어린이합창단 방문(2017.10)
칠레	라세레나	1999	
라오스	루앙프라방	2007	기획투자부차관 및 수파르봉대학 총장 방문(2015.11) 루앙프라방주 부교육청장 국제관계대사 면담(2018.3)
체코	브르노	2016	브르노 부시장일행 2017 APCS 참가(2017.9) WTA총회유치단 방문(2018.6)
세이셸	빅토리아		
일본	쓰쿠바		
알제리	알제		
몽골	울란바토르	2011	공무원 1명 K2H프로그램 참여(2018.4~10) 국제관계대사 등 울란바토르 환경포럼 참석(2018.6)
중국	우한	2006	청소년 스포츠교류(2015.7) 우호협력체결 10주년기념 협의서 서명(2016.6) 우한 과학기술국 부국장 일행 2017 APCS 참가(2017.9)
중국	지난	2011	상호교류증진 협의(2015.9) 지난 정책연수단 시청 방문(2016.6) 지난 감찰국 부국장일행 2017 APCS 참가(2017.9)
중국	칭따오	2012	칭따오 국제류담당 혁신포럼 참가(2015.10)

국가	도시	MOU체결	교류현황(최근 3년)
인도 네시아	탕그랑 셀라탄	2016	탕그랑세라탄 시장일행 대전 방문(2016.7) 탕그랑세라탄 부시장일행 WTA Hi-Tech Fair 참가 (2016.11) 대전대표단 방문 ODA사업 논의(2018.4)
독일	프랑크 푸르트	2003	
이탈 리아	피렌체	2010	
우크 라이나	하리코프	2013	
중국	허페이	2003	허페이대표단 대전세계혁신포럼 참가(2015.10) 허페이대표단 WTA Hi-Tech Fair 참가(2016.11) 허페이 부시장일행 2017 APCS 참가(2017.9)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이상의 내용을 보면 19개국 중 7개국이 최근 3년 간 교류실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형식적인 면담 및 회의참가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교류사업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대안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도출할 수 있음.
-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류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임. 대표적인 예로 자매도시와 다양한 활동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와 외부전문기관이 연계된 교류가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 결국 일회성 행사 위주의 교류 지양 필요하며, 국제교류 대상지역의 확대와 다원화가 요구됨. 아울러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내향적 국제화 프로그램과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재한 것이 현실임.
-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역시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도 (자매도시 관련) 정보공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것은 전담조직 구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전문 인력 부족한 것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윤기석 2014).

4. 대전시 국제교류 전담인력 현황

-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4]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 현황

직책	부서	담당업무
국제관계대사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 엑스포 재창조 - 2018 WTA총회 개최 - 국제교류총괄
국제교류담당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교류 담당 업무 총괄
	총무담당관	- 의원 국제교류 및 해외출장 관련 사항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교류사업 추진: 북미, 아프리카 등 - 시장출장 업무지원 - 해외 외빈접수지원 - 자매우호도시 결연체결 - 기타 국제교류업무 지시사항 처리
주무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	- 영어 통번역 - 국제교류업무: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러시아 - 외국인정책 및 위원회 - APCS 관련

-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협력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총 7명인데, 국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5명에 불과함
- 나머지 2명은 총무담당관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각각 근무하며, 소속 부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됨.
- 다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지원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바, 대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5] 주요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지원조직/인력 현황

시도	조직	인력(명)
서울특별시	2담당관 4팀	28
부산광역시	1과 2팀	18
인천광역시	2담당관 5팀	31
경기도	1과 1자문관 3팀	20

2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진단(FGI)

1. 조사 설계

- 지방정부 및 대전시의 공공외교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은 총 4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구성됨.
 - 전문가 A: 충남대학교 교수
 - 전문가 B: 대전대학교 교수
 - 전문가 C: 부경대학교 교수
 - 전문가 D: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들에게는 총 5개에 달하는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공외교와 유사한 외교 행위인 국제교류협력, ODA 등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2. 귀하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사례에 대해 알고계신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3.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귀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5. 끝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¹⁷⁾

17) 5번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5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 결과

1) 공공외교와 국제교류협력, ODA 등과의 관계

- 지방정부의 외교행위에는 국제교류협력, ODA, 그리고 공공외교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된 가운데 시행되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함.
-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각 개념의 상이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가 다른 외교행위보다 상위개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공공외교 행위자들의 자발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전문가 A〉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행위와는 다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부에서 정의한 개념을 상기한다면, 국제교류가 국가적 외교행위의 정당성을 발휘한다거나, 국제교류협력이 공공외교를 유인한다는 직선적인 사유방식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공공외교와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행위에서의 관계설정은 선후의 직선관계라기보다는 범위와 정책방향 등 프로세스의 운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관계에서 공공외교는 광의적이며 기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그 현상 및 실체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ODA를 이해하는 것이 정책의 설명에 더욱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외교는 국제교류협력 및 ODA를 둘러싼 주변적이며 바탕적인 차원으로 생각되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B〉

공공외교의 개념 자체가 국제교류협력이나 ODA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협력은 대상과 목적 및 주제 등이 특정하게 전개되는데 반하여 공공외교는 대상이나 목적 및 주체가 상당히 넓게 확장되어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와 민간영역의 모든 국민들이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DA는 공적개발원조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저개발국이나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유무상의 원조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맥락과 개념을 갖습니다. 국제교류협력보다 보다 큰 범주와 내용을 갖는 것이 공공외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C〉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이익의 증대라는 점에서 국제교류협력 또는 ODA보다는 공공외교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차원의 국제교류협력과 ODA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자율적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관계는 공공외교를 중심축으로 한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외교 사례에 대한 평가

- 전문가들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과학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공공외교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대전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외교에 대한 명확한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지방정부가 이러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기관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전문가 A〉

대전광역시의 경우 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단위별로 많은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로 2016년부터 개최한 세계과학문화포럼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2018년도에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마케팅공사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포럼입니다. 이 행사에는 지역의 대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도시라는 위상을 체험하기도 하며, 미래사회에 영향력 및 파급력이 큰 과학기술의 전개가 거론됩니다. 과학기술포럼이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 및 특정 정책추진에 큰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국가단위의 협력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B〉

제가 소속하고 있는 대전대 소재지인 대전시는 아직 공공외교의 기본 정책 틀도 명확하게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외교, 문화외교 측면에서 내용이나 개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나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문자 개인의 자격으로 보자면 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분과위원이며, 외교부 공공외교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외교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잠재적인 친 한국 외국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을 단순히 화심이나 이익실현의 대상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호감과 좋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상품 등의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우방과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가 C〉

최근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제13회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는 어울마당 (Global Gathering 2018)”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제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시작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용이성을 고려한 테마와 콘텐츠를 담는다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D〉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재단법인의 전문적 교류단체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제교류센터 등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방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

-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든다는 점이 지적됨.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외교 대상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이 slow life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소개와 서비스를 통해 공공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전문가 A〉

공공단체가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 이익관계 및 현실성에 몰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성 및 단기적 이익관계를 지향할 경우 역의 관계로 공공성보다는 국가 간의 정치적 경쟁관계에 빠져들 수 있어 공공외교가 가지는 선순환 효과를 도시가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특정주체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의 인정성, 목적의 실재성, 국가기관과의 정책적 적합성, 지속성이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B〉

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배제한 외교정책의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우호층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과 국가에 호감을 갖고 상품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폭넓은 일군의 집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전 혹은 한국 문화와 사회의 장점들을 소개하고 관심과 호기심이 경제적 소비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경우 Slow Life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소개와 서비스에 치중한다면 충분한 공공외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C〉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전문가 활동 보다는 민간부문의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과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전문가 D〉

첫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간 신뢰구축입니다. 서로 모르는 2인이 신뢰와 정을 쌓아 결혼을 하듯, 지방정부간 국제교류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일변도의 공공외교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지방정부와 의회는 공공외교를 통해 “돈 벌자”는 경제적 이익에 1차적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상대방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외교를 추진하려면 당사자 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교류협약이 있을 때에만 일회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역점적으로 교류하려는 해외 지방정부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상호파견해서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입장

- 이 질문은 본 과제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역시 공공외교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를 위해 질문을 한 것임.
- 응답자들은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제정세와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조 하에 사업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전문가 A〉

최근 남북관계 완화 속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관심 및 지방도시의 정책적 추진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대전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문가 회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결국에 통일에 대한 준비적인 성격으로써 도시협력이며, 남북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초가 됩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가진 만큼 도시 간 수평적인 협력관계의 지속은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일 만큼 남북관계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즉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등 정당성을 가지지만 특수적인 문제로 인한 불확정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인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B〉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국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레일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유라시아 철도 개발과 관련한 아이템과 관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C〉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과 북한 지역(행정단위)을 매칭하여 인적교류 또는 문화적 교류를 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과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D〉

남북교류협력은 처음 시작하는 지방정부와 이미 북한 측과의 교류채널을 확보하는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처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의 과제는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북한 측 접촉 창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북한 측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 측과의 교류채널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루트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북한과의 접촉창구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같은 대북교류협력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북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방정부 대북교류협력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변덕도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대북교류협력을 단순한 일회적 행사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동의가 지속추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대북교류협력은 남북통일과 인도적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북교류협력은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인식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대전시 공공외교의 문제점 요약

- 지금까지 살펴 본 대전광역시 공공외교의 현황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들이 아직까지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음.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한 것이 최근 부터였다는 점에 기인할 것임. 하지만 향후 공공외교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임.
 - 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지원조직 및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강조할 수 있음. 담당 인력의 업무 능력은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측면과 순환보직 특성 상 업무 지속성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특히 외교부 등을 통한 자원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2017년 대전광역시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로 하는 ODA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자원 확보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대전시를 알리는 미디어 외교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의 시행하고 있지만, SNS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전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대전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 1절. 중앙정부와의 공조체제 유지
- 2절. 대전시 자체의 노력
- 3절.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안)

5장 대전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1절. 중앙정부와의 공조체제 유지

1. 국익 추구를 위한 협력

- 공공외교 역시 외교의 일환이다. 공공외교 초기 단계에서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이익의 증진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정권 출범 시마다 신정부가 주창하는 국가상을 홍보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한인택 2016, 8-11).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일대일로¹⁸⁾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지방정부는 일대일로 대외교류의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음. 중국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김예경 2017).
- 그동안 한국은 강대국 편중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교적 자율성에 제한이 있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다자외교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영향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여기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동시에 정책을 추진하면 함께 국가이익의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이 싸드(THAAD) 문제로 갈등관계에 빠져있었던 상황에서 전라남도도와 장쑤성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전개하였음.

18) 일대일로 구상은 과거 중국을 기점으로 동·서양을 이어주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국가대전략을 칭함.

2. 정부의 효율적 지원전략 강구¹⁹⁾

1)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 현재 투입되는 국제교류재단의 예산과 인력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부분은 각 기관마다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협조 이외에 하나의 설정된 목표 하에 실행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움.
- 그러나 공공외교의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실행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2) 초청사업의 전략화

- 초청사업의 전략화는 관련 국가의 초청인사 풀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임.
-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년에 보통 5-6회 한국을 방문하지만 이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임.
- 따라서 전문가에 대한 네트워크의 폭을 확대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그들의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사업비 제공에 있어 신진 학자의 발굴

- 신진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련 연구 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소규모라도 연구 비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국내학자가 연구 책임을 맡으면 반드시 외국 학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반대로, 외국 학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문그룹을 활용하도록 하여 전략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19) 우정엽(2018)의 글을 참조하여 재구성.

2절. 대전시 자체의 노력

1. 전문성과 지속성의 확보

- 지방정부에서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과 조직의 부족임.
- 외국어 능력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대전시의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말 할 나위도 없음.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지역사회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들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전문가 심층면접 에서도 한 전문가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음.

〈전문가 D〉

국제교류는 사람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 교류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은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적극적 대인능력, 그리고 무역/투자 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말합니다.

- 아울러 대전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공외교의 기본적인 특성이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전문가 A〉

협약 등 공식적이며 일회적 행사위주의 실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규모화 시켰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범위, 정책적 지향성을 공조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외교 측면에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여 단계별 계획을 기획하는 것이 정책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성 및 정책설계의 절차성을 중심으로 장기적 차원의 그 무언가를 시민들과 함께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C〉

대전광역시는 과학기술 분야에 보다 특화된 도시이고 최근 4차산업혁명관련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외교의 방향을 과학기술 도시의 미래로 설정하고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정부사업 유치

-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공외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따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한 전문가는 ODA 사업을 통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추진사례를 아래와 같이 강조함.

〈전문가 D〉

지방정부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연결과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ODA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섭하기 어려운 해외 지방정부 교류사업에 동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ODA에 참여해서 캄보디아 씨엔립에 작은 마을에 교류사업을 통해 “수원시마을”을 조성한 예가 있습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디어 외교 활성화

-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재 가운데 미디어는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미디어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외신기자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위원회 등이 언론인 국제교류 활동을 펴고 있음
-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디어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상기 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앞서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공공외교가 그 본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전시가 그동안 국제적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축적된 인프라를 토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3절.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안)을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시행령」 등의 법률과 대전광역시에서 제정한 국제교류와 관련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보았음. 초안이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외교법」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외교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전광역시의 도시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외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추진·운영하는 모든 공공외교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외교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외교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공공외교와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내용) ① 공공외교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중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2.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기관)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재외동포 거주지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공공외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2. 과학도시 성장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발컨설팅
3.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 등 대상 교육훈련 및 초청연수사업
4.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제8조(공공외교협력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외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외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계대사,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총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회의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공공외교 관련 학과 교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원
4. 공공외교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공공외교 대상국가(지역) 및 사업 선정
 3. 공공외교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공공외교 대상 국가(지역)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대전광역시 자매·우호도시 및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 및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의 공공외교사업을 민간단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개제안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 교육훈련사업은 세계과학도시연합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시장은 공공외교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공공외교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 임직원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참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외교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2절. 정책 제언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を 가지고 수행됨.
 - 첫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 시도함. 이에 대한 연구내용은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대한민국 공공외교법」과 「공공외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음. 아울러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제1차 공공외교주간 행사의 내용을 포함시켰음.
 - 둘째, 7개국에 달하는 주요 국가의 공공외교 사례와 한국정부 및 한국의 지방정부가 시행해 온 주요 공공외교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였음.
 - 셋째,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강조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관련 현황을 일차적으로 파악해 보았음.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시행계획,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 현황, 대전광역시의 국제교류 전담 인력 현황, 아울러 향후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가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통해 제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대전광역시 공공외교의 현황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들이 아직까지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음.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한 것이 최근부터였다는 점에 기인할 것임. 하지만 향후 공공외교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임.
 - 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지원조직 및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강조할 수 있음. 담당 인력의 업무 능력은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측면과 순환보직 특성 상 업무 지속성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특히 외교부 등을 통한 자원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2017년 대전광역시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로 하는 ODA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재원 확보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대전시를 알리는 미디어 외교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의 시행하고 있지만, SNS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전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2절. 정책 제언

1. 중앙정부와의 협력

- 공공외교 역시 외교의 일환이다. 공공외교 초기 단계에서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이익의 증진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정권 출범 시마다 신정부가 주창하는 국가상을 홍보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한인택 2016, 8-11).
-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동시에 정책을 추진하면 함께 국가이익의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대전시 자체의 노력

- 지방정부에서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과 조직의 부족임.
- 외국어 능력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대전시의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말 할 나위도 없음.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지역사회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행위 주체들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전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공

외교의 기본적인 특성이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공외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따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재 가운데 미디어는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디어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외신기자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위원회 등이 언론인 국제교류 활동을 펴고 있음.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디어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상기 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외교가 그 본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대전시가 그동안 국제적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축적된 인프라를 토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고영선(2016),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 National Assembly Review (2016 December), 62-63.
-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 외교부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2016), 「한중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현재와 미래」.
- 김기정 외. 2012. 「한국 공공외교의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 김성해(2014), “글로벌 공론장, 여론전쟁 그리고 증견국 비전: 한국형 미디어외교 모델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와 정치』 제1권 제2호, 35-66.
- 김예경(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Vol. 327.
- 김장현(2013), “증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 정책 포럼』 2013-03, 1-19.
- 김재중(2018), “대전시-베트남 교류, 훈훈한 정으로 ‘성숙’” 『디트News24』 (5월 20일).
- 김태수(2014), “프랑스의 분권적 대외협력: 리용시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공동 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태환(2016a),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6-45.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태환(2016b), 「현 정부 정책공공외교의 현황과 전략적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9.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형수 · 노병렬(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2호, 91-113.
- 남석상(2016), “거점네트워크플랫폼 모델을 통한 공공외교의 효율성 제고: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전광역시(2018), 「2018 주요 업무계획」.
- 대전광역시(2018),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도종윤(2017), “공공외교로서 프랑스의 문화외교: 한불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정치학회보』 7집 2호.
- 마영삼(2011),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Jpi 정책포럼』 제83권, 1-19.
- 문현미(2018),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공공외교 비교 연구: 경기도와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희(2016),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일본 미디어의 보도동향과 대일 공공외교 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20.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4.
- 박명희(2018), 「일본 내 혐한현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NARS 현안분석 vol. 21.

- 박은하(2018), “한-베트남 ‘마음’ 이어주는 공공외교.” 『문화일보』(3월 21일).
- 박재욱·류재현(2009), “한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비교연구: ‘한일해협 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2), 155-178.
- 백우열·함명식(2017), “중국의 대한민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집 5호, 135-159.
- 변지영·정현주. 2018. “한국의 공공외교와 세종학당: 2007-2015년 국가별 지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2집 2호, 173-201.
- 성태규(2014), “충청남도 국제협력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 송태은(2017),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미국의 세계적 어젠더와 세계여론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163-198.
- _____ (2018), “빅데이터와 공공외교.”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No. 72.
- 신원득 외 공저(2016),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 우정엽(2018),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한 공공외교 평가 및 전략.”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11.
- 윤기석(2014), “대전광역시 국제협력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보고. 2014. “19세기 초 중서(中西) 문화 접촉과 The Chinese Repository: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의 중서 언어문화 접촉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66권, 365-403.
- 이상문(2018), “대전-중국 선양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중도일보』 7월 18일.
- 이승준(2018), “엇나간 ‘선거한류’” 『한겨레21』(9월 10일)
- 이장원(2016),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중국 공산당의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한중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3호, 1-37.
- 이태동(2018), “기후변화, 초 지방관계(Trans-local Relations)로 해결될 수 있을까?” Homo Culturalis (1월 10일).
-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편(2016), 『한국형 공공외교 평가 모델』.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문화원.
- 주동주(2017),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심포지움 자료집.
- 주미영(2016), “신뢰한국을 위한 공공외교에서의 국가평판 제고 전략.” 『정치·정보 연구』 제19권 제1호, 109-134.
- 진행남(2013),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정책

- 포럼 No.2013-03, 1-10.
- 장세길(2008), “진천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호.
- 차재권(2017a), “세방화(glocalization)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치의 이해 1』. 서울: 박영사.
- _____ (2017b),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JPI PeaceNet (12월 6일).
- 최용석·김효미(2016),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외교가 국가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6권 제13호, 426-438.
- 최용환 외(2015), 「경기도 국제교류기관 설립방안 연구」 GRI 정책연구 2015-36. 수원: 경기연구원.
- 켄트 칼더, 강찬구 역(2016), “동북아 3국 대미 공공외교 성적표: 대중매체 공략 中, 로비 주력 日 … 한국은 코래 틈에 낀 새우?” 『주간동아』 통권1023호. 서울: 동아일보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전라북도 국제교류 협력 마련에 관한 연구」.
- 허 훈(201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네트워크 강화.” 『지방행정』 Vol. 775, 40-43.
- 현인택(2016), 「우리나라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JPI정책포럼 2016-02.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1-11.
- 후지사와 키이치·김승배. 2018. “협동적 공공외교로서의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의 공유와 가시화.” 『한국정치학회보』 52집 2호, 101-121.
- Kadir Ayhan(2016), “정부와 NGO간 공공외교 협력에 대한 분석: 한국, 일본, 터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oinowski, Alison(2016), “Public Diplomacy and Australian Practice.” *Social Alternatives* Vol 35, No. 2, 41-47.
- Chan, Dan Koon-hong(2016), “City Diplomacy and “glocal” governance: revitalizing cosmopolitan democracy.”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9, No. 2, 134-160.
- Cull, N. J.(2008),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Phrase.”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edited by Nancy Snoe and Philip M.Taylor, 19-23. New York: Routledge.
- Giddens, Anthony(1990), *The Consequence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tierrez-camps, Arnau(2013), “Local Efforts and Global Impacts: A City-Diplomacy

- Initiative on Decentralization.” *Perspectives* Vol 21, No. 2, 49-61.
- Hartig, Falk(2016), “How China Understands Public Diplomacy: The Importance of National Image for National Interest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8, 655-680.
- Hujigh, Ellen(2017), “Indonesia’s Interestic Public Diplomacy: Features and Futures.” *Politics & Policy* Vol. 45, No. 5, 762-792.
- Kim, Hwajung(2017), “Bridging the Theoretical Gap between Public Diplomacy and Cultural Diplomac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2, 293-326.
- McDowell, A(2008), “Public Diplomacy at the crossroads: definitions and challenges in an opensoirce era.” *FLETCHER OF WORLD AFFAIRS* 32(e).
- Nicolson, Harold(1950), *Diplomacy*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2004. *Soft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 _____. 2011.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 Proedrou, Filippos & Christos Frangonikolopoulos(2012), “Refocusing Public Diplomacy: The Need for Strategic Discursive Public Diplomacy.” *Diplomacy & Statecraft* 23, 728-745.
- Rivas, Villanueva(2017), “Mexico’s Public Diplomacy Approach to the Indo-Facific: A Thin Soft Power?” *Politics & Policy* Vol. 45, No. 5, 793-812.
- Seib, Philip(2016), *The Future of Diplomacy*. Cambridge: Policy Press.
- Tuch, H. N. 1990.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ew York: St. Martin’s Press.
- Zhao, Kejin(2017), “China’s Public Diplomacy for International Public Goods.” *Politics & Policy* Vol. 45, No. 5, 706-732.

〈부록 1〉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20.] [대전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8.4.2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국제협력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추진·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공조유지
 2.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3.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내용) ①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중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2.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기관)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재외동포 거주지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2. 과학도시 성장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발컨설팅
 3.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 등 대상 교육훈련 및 초청연수사업
 4.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제8조(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계대사,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총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과 교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원
 4.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체 임직원
-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국제개발협력 대상국가(지역) 및 사업 선정
3.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지역)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대전광역시 자매·우호 도시 및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 및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민간단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사업자는 공개제안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 교육훈련사업은 세계과학도시연합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 임직원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참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4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6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②~⑫ 생략

〈부록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 2017.7.7.] [대전광역시조례 제4926호, 2017.7.7.,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제교류대상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대상"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제교류대상과 자매결연, 교육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협조적 업무관계를 위하여 체결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시대에 맞춘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이해 등에 관한 사항
 2.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에 관한 사항
 3.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기술 습득,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의회 의결)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회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회의의원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 실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 제492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국제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록 3〉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8.] [대전광역시조례 제4586호, 2015.12.18.,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법인·단체를 포함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학술·보건·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영)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사무관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회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조례 제4586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FGI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유병선
(042-530-3598, yubsun3339@hanmail.net)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입니다(대한민국 공공외교법).

1. 공공외교와 유사한 외교 행위인 국제교류협력, ODA 등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2. 귀하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사례에 대해 알고계신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3.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귀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5. 끝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정보	직장명		전문분야	
	성별		연령	() 세